

새바람 행복 경북!

변해야 산다

경상북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1차)



경상북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1차)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



지원대상

규모 100인 미만 사업장(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 우선 지원
* (지원 제외 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사업장

• 요건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 2. 23.) 이후 3. 31.까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근로자

• 요건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로서 2. 23. ~ 3. 31.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 제외 대상자 :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사업장용, 근로자용)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

중복제외 사업 성격상 중복이 부적절한 경우

※ 가구별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해당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수급자로 본다.

대상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관련법령에 따른 지원
경북도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중위소득 85%이하 가구, 50~80만원 차등지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유급휴가지원금(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개인별 일급기준(일 13만원 상한)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사업장 휴업	휴업수당 발생(근로기준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중국공장 휴업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작업량· 매출·고객감소로 인한 사업장 휴업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4 ~ 2/3, 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내용 및 기준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고려하여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 대상 최대 일 2.5만원(월 50만원) 지원
* 단 지원신청금액이 예산보다 많은 경우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20일
* 1차(2. 23. ~ 3. 31. 해당분) 집행 후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2차 지원계획 결정
**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한 경우 ① 저소득자 ② 세대원이 많은 가구 우선 지원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 및 접수

도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주소지 시·군에, 경북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4. 9.(목) ~ 4. 29.(수) / 온라인(도, 시군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 접수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12일까지는 온라인·우편 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명단, 소정근로시간 등)
-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19. 3. ~ 20.2.),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

시군은 사업주(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 서류 검토(필요 시 보완 요청) 및 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 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중복제외 확인 : 부정 및 중복수급에 관한 약약서 징구
- 지급 전 각 시군 해당부서, 고용노동청 중복수급 여부 확인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
- ① 교육 관련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청소년 상담사 등
- ② 여가 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③ 운송 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9개) >

-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제외)



지원요건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 2. 23.) 이후부터 3. 31.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 제외 대상자 :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지원내용 및 기준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고려하여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 대상 최대 일 2.5만원(월 50만원) 지원
* 단, 지원신청금액이 예산보다 많은 경우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20일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노무 미제공일수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지급
** 1차(2. 23. ~ 3. 31. 해당분) 집행 후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2차 지원계획 결정
***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한 경우 ① 저소득자 ② 세대원이 많은 가구 우선 지원
※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에 대해서도 소득감소에 따른 지원 가능
ex) 소득 25~50% 감소 → 10일(25만원), 소득 50~75% 감소 → 15일(37.5만원), 소득 75~100% 감소 → 20일(50만원) 지원
- 중복제외 : 기초생활수급가구, 경북도 긴급생활비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 가구별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해당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수급자로 본다.



추진절차 및 일정

- 신청기간 및 방법** 4. 9.(목) ~ 4. 29.(수) / 온라인(도, 시군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 접수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12일까지는 온라인·우편 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특고 입증서류(신청일 전 3개월 기간 해당 용역(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19. 3. ~ 20. 2.), 본인 통장사본

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

시군 및 수행기관에서는 신청서(증빙서류)를 검토 및 요건 확인(필요 시 보완 요청)

지원금 지급

-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신청자가 희망하는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특고, 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등에
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
직자의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고 등
(실직 1개월 이상인 자에게 우선 제공)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도 예산에 반영
연차유급휴가(1개월 만근 시) 적극 부여, 초과근로 지양
** 그간 단기 일자리 사업에 해당 지역 생활임금을 적용한 자치단체는 생활임금 지급 가능



지원기간

'20. 4. 1. 이후 자치단체와 근로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최대 3개월



지원절차

일자리 발굴 등 세부계획 수립 → 지원자 모집 및 결정 → 근로계약서 체결
→ 단기 일자리 사업 시행



경상북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1차)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 및 지역주도의 일자리사업으로 지역 내 고용
안정 도모

신청기간 및 방법

4. 9.(목) ~ 4. 29.(수)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12일까지는 온라인 · 우편접수만 가능

사업수행

도 및 시군(수행기관 선정 가능)
도에서 사업총괄, 시군에서 수요파악 후 직접 수행



지원내용

- 무급휴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최대 일
2.5만원(월 50만원)/2개월
-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20일
* 중복제외 : 기초생활수급가구,
경상북도 긴급생활비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 실직자 단기일자리 1인당 월 180만원/3개월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
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 경제위기에 취약한 영세사업주, 저소득층 근로자, 장기
실업자 등에 대한 단기일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